

의안번호	제 71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4월 30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13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30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유

-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임.
-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명시한 배상·보상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쟁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는 피난민들이 철로 위를 걸어서 피난하던 도중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건 발생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명시한 배상·보상 관련 보상금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쟁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노근리사건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충청북도의회